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80622 판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8062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3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준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9.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3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409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부 동 산 의 표 시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44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평택시 [] 입야 1898㎡
2. 경기도 평택시 [] 대 28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898분의 47.4289
2. 283분의 7.0719

- 이 상 -

